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청주)2025나50302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가단7510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17.
판 결 선 고 2026. 2.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23. 10.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3.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독신인 망인의 어머니로서 그 법정상속인이다.

1) D: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50,625원

2) E: 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5,000만 원, 피보험자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101,006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¹⁾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23. 5. 3. 자정 무렵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2023. 5. 4. 01:20경 청주시 흥덕구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G호에 혼자 투숙하였는데, 같은 날 04:50경²⁾ 위 객실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9. 08:4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망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1)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7조.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14조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사망진단서 및 경찰 H가 작성한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기재된 사고 시각이나, 망인은 2023. 5. 4. 05:15경 추락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바, 위 시각이 정확한 추락 시각인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추락하였고, 그 결과 머리와 온몸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태나 망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신변 비관으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4, 28, 33호증,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I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 제3조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3. 5. 3. 20:00경 지인 J와 만나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고나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1:17경 지인 신탉을 만나 소주,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신 후 자정 이후에 다시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모텔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2023. 5. 4. 01:19경 이 사건 모텔 맞은편에 있는 'K' 건물에서 나온 뒤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 01:22경 혼자 G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입실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모텔은 망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종종 혼자 투숙하던 장소로, 망인은 이 사건 당일 입실하면서 모텔 주인에게 소주 2병과 블랙커피를 사다 달라고 하였는데, 모텔 주인은 망인이 술에 취해 보여서 소주 1병과 블랙커피만 사다 주었다. 망인은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 한참 있다가 카운터로 전화하여 모텔 주인에게 '내 핸드폰 어디에 있냐. 찾아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객실에서 소주병 1병이 빈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이 이 사건 객실에 입실한 후부



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이 사건 객실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다.

망인의 평소 주량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위와 같이 망인이 지인들과 상당한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 주인이 보기에 망인이 입실 당시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점, 이후 이 사건 객실에서 망인이 소주 1병을 혼자 다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여 '핸드폰을 찾아오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새벽 5시경 무렵에는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망인은 이 사건 객실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깥으로 추락하였다. 이 사건 객실 바닥에서 창틀까지의 높이가 약 95cm이고, 창문이 활짝 열린 상태의 가로 폭이 약 40cm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창문에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하나, 위 창문 바로 아래에 약 44cm 높이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던 점, 당시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술에 취해 테이블을 밟고 창틀 위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실족하였을 가능성이나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해지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렸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6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이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외래성' 및 '급격성' 요건은 충족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등은 존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망인이 술에 취하여 실족하였거나 판단능력 미약 또는 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망인이 이 사건 객실 창문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우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3. 5. 4. 04:50경 및 05:02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모텔 객실 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건 내역이 있는 사실, 위 두 번째 신고전화에서 한 남성이 '가경 M (이 사건 모텔)인데 오세요'라고 말한 사실, 위 두 번째 신고전화 직후 경찰이 이 사건 모텔로 전화를 걸었을 때 모텔 주인이 '방금 와당탕탕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모텔 주인이 망인이 투숙한 이 사건 객실을 안내한 사실, 망인의 동생이 2023. 5. 9. 경찰에서 '망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물으면서 돈 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다'고 말한 사실, 경찰 H가 2023. 5. 16. '망인은 신변 비관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며, 범죄 혐의점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6, 27, 34, 3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추락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고, 평소에나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망인이 지인, 가족 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의 동생 N은 경찰에서 '망인이 이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이나 문자를 보낸 적은 전혀 없었다. 의아하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였거나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전 두 차례의 112 신고전화를 망인이 걸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전화를 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단하기는 어렵다.

2) 망인에게 부양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었고,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망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거나 평소 동생에게 돈을 달라고 연락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망인에게 자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얼마 전인 2023. 4. 21. 모친인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후 치과에서 치아 5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2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는 삶의 의지를 잃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일반적이지 않다.

4) 제1심 증인 H는 '신변 비관으로 인한 추락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하지 않았고, 작성된 사망진단서, 진술조서 및 CCTV 영상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는지 여부나 망인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 등은 확인한 적이 없다. 망인이 고의로 뛰어내렸는지 과실로 추락했는지 알지 못한다. 기



록을 면밀히 확인해보니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족사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고, 신변 비관이 있었을 거라는 주관적인 생각에 그렇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250,000,000원 (= 이 사건 제1보험계약 100,000,000원 + 이 사건 제2보험계약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0.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17

판사 고진흥

판사 이창현